

# 국 토 교 통 부

## 훈계요구·통보

제 목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원주시, 횡성군, 철원군, 삼척시, 평창군, 인제군, 양양군

관 련 자 ① 원주시 ○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② 원주시 ○○면사무소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③ 원주시 ○○○○과(전 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④ 횡성군 ○○○○사업소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⑤ 철원군 ○○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⑥ 철원군 ○○○○○○사업소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○○○  
○○○

내 용

위 관련자 중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는 2012. 4. 23.부터 2013. 7. 14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7. 15.부터 2014. 8. 31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9. 1.부터 2016. 2. 24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7. 22.부터 2015. 12. 31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2. 7. 1.부터 2013. 12. 31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6. 2.부터 2016. 6. 30.까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업무와 허가기준이 미달되는 사업자, 법령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였다.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[별표 1]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로 최저보유 기준에 맞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

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[별표1]에 따르면 차고지 설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, 원주시(○○○○과)에서는 2012. 10. 10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○○○의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, 차고지 면적 확보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<sup>157)</sup>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전부정지(30일)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,

위 ○○○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6. 10. 27. 차고지 임차기간 경과자에 대하여 의무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통지 하는 등

강원도 원주시 등 7개 시·군<sup>158)</sup>에서는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운송사업자 ○○○ 등 88명의 사업자(차량 146대)에 대해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.

**조치할 사항**            원주시장, 횡성군수, 철원군수, 삼척시장, 평창군수, 인제군수, 양양군수는

**[훈계]**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157)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158) 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철원군, 삼척시, 평창군, 인제군, 양양군

**[통보]**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○○○ 등 88명에 대해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9조에 따라 사업전부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